

#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 제안 설명

의안번호 제957호

「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」에  
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본 안건은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문화본부 소관  
출연기관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여부에 대해  
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,
- 세종문화회관은 공연예술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과 보급,  
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·관리 및 조사·연구 등을  
수행하고 있습니다.

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 
의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,  
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이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